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의무 조항 중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위탁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장의 과도한 권한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탁자의 의무 조항 중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불가시 군수가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를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정(안 제10조제4항)

○ 위탁해지 조항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15. 10. 22 ~ 2015. 11. 11(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의무조항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위탁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권한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 안 제10조 제4항 수탁자의 의무조항 중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 안 제12조 제1항 복지관 위탁의 해지 조건 중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과도한 권한 부여에 대하여 해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로서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성주군의 노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책무 (안 제3조)

나.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보조금지원 범위(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에 2억3천만원 반영되었음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 가결(2015.11.6)

바.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2015. 8. 31.)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은

-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주요시책 등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일부를 받는 자로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5.10.22.~2015.11.11.)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 조항 및 관련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 제1항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변경으로
 -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적용코자 하는 조례로서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중위소득 기준 맞춤형 급여로,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되고,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므로 생계·의료·주거급여로 제한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관련 조항을 우리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복지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운영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5,600천원정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10. 22 ~ 2015. 11. 11)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7조를 제15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탁운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성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 행정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